



제1장 서론

제1절

제2절

마약류의 개요

세계 마약류 일반 동향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정의

-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¹⁾의 보고에 따르면,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 ▶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이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1]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 종류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양양하거나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 일반적으로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반합성 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1) 마약

가) 개요

-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추출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표 1-1]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엽	3	
추출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81	일부 의료용 사용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내 종류

(1) 천연마약

(가) 양귀비

- ▶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罌粟)이라 불리는 식물로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그림 1-1] 양귀비



- ▶ 기원전 5,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서 전한 것이 아편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며, 그 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함
- ▶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1년생 식물(1~1.5m)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지대(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이란 접경지역) 및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 · 라오스 · 태국 접경지역)를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음

- ▶ 양귀비라는 명칭은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그 시대 최고의 미인이었다는 양귀비에 비길 정도로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 ▶ 국내에서의 양귀비는 아편을 추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 산간지역에서 가정상비약이나 동물 치료약으로 밀경작 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나] 아편(阿片)

- ▶ 아편(opium)은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어 흘러내리는 우윳빛 추출액을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 암갈색의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도 함

[그림 1-2] 아편



- ▶ 민간에서는 아편의 탁월한 진통효과 때문에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아편을 처음 한두 번 흡입하였을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등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에는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여야 되고 이는 결국 심각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짐
- ▶ 아편의 남용이 계속되면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대임

- ▶ 이러한 폐단으로 영국과 아편전쟁(1840~1842)을 벌였던 중국(당시 淸國)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음

[다] 모르핀

- ▶ 모르핀(morphine)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1805년 독일 약사 Sertü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모르핀이라고 명명함

[그림 1-3] 모르핀



- ▶ 아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킴
- ▶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mg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 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라) 코데인

- ▶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칼로이드(alkaloid)의 일종으로서 의학적으로 진통작용은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진해 및 진정작용은 탁월하며,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은 적은 편이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함
- ▶ 코데인은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형상은 무취의 백색 결정이나 결정성 분말, 정제, 캡슐 또는 감기약과 같은 용액의 액상을 하고 있음
- ▶ 최근 코데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²⁾이 우리나라에서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2) 중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기약으로 모르핀(3mg/g)과 코데인(1.3mg/g) 함유

[마] 헤로인

- ▶ 디아세틸모르핀(diacetylmorphine), 즉 헤로인(heroin)은 양귀비의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에 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 등을 첨가하여 혼합, 침전, 여과, 가열의 과정을 거친 후 모르핀염기에 무수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천연마약임

[그림 1-4] 헤로인



- ▶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임
- ▶ 모르핀을 원료로 한 만큼 일반적인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함
- ▶ 헤로인은 ‘용감한 · 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서 1874년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바) 코카인

- ▶ 코카인(cocaine)은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등지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임

[그림 1-5] 코카나무



[그림 1-6] 코카인



- ▶ 코카잎을 씹으면 잎 속의 알칼로이드가 사람의 점막에 흡수되어 지각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고대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 중 최면효과를 내기 위해, 서민들은 일상의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함
- ▶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시 유럽에 전해진 코카잎은 1800년대 중반에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 의료용 진통제로서 처음 사용되었음
- ▶ 남미일대에서 재배된 코카잎은 농부가 직접 잎사귀를 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반죽)를 만들고 이를 정제하여 코카인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글 내 밀제조시설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은밀히 코카인 추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엄밀한 규제 하에 코카인을 정식 생산하여 국소용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음
- ▶ 남미의 일부지역 사람들은 직접 코카잎을 씹거나 코카페이스트를 흡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용자들은 수정체 분말을 코로 들이마시거나 주사를 놓아 투약함

- ▶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이 일어나고,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함
- ▶ 한편 크랙(Crack)은 코카인과 탄산나트륨 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하는 백색 결정체로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으며, 유리관에 넣어 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함

[그림 1-7] 크랙



(2) 합성마약

- ▶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티딘(pethidine)계, 메타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음

(가) 페티딘계

- ▶ 페티딘(pethidine)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 1939년 독일 헤스트제약(Hoechst)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당시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며 현재 알려진 종류로는 페티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 등 약 23종이 있음

[그림 1-8] 페티딘



- ▶ 페티딘은 화학적으로는 모르핀과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 모르핀과 유사하고 진통효과 외에 진정효과도 있으며 투약시 3~6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진통제임

[나] 메타돈계

- ▶ 메타돈(methadone)은 2차대전 중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에 의해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합성마약으로 현재 메타돈, 아세틸메타돌, 디피파논 등 약 22종이 알려져 있음

[그림 1-9] 메타돈



- ▶ 개발 당시 메타돈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작 2차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약효가 모르핀보다 더 긴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전후 마약중독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음
- ▶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당시 23개사의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약품에 불법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제주사 등으로 속이고 팔다가 수만 명의 마약중독자를 발생시킨 소위 '메타돈 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킴
- ▶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 수 있음

[표 1-2] 향정신성약품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의료용 사용여부)
가목(환각제)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툼,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44	불사용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나목(각성제)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등	44	제한적 사용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다목(진정제)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62	사용 그리 심하지 않은 의존성
라목(진정제)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로라제팜, 졸피뎀, 날부핀, GHB,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	69	사용 다목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종류

(1) 메트암페타민

-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필로폰’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 ▶ 암페타민류에는 메트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텍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디메틸암페타민 등이 있는데 이 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킴
- ▶ 메트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등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으로 불리고 있음.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형태는 ‘speed’로 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
- ▶ 메트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함

- ▶ 메트암페타민은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트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 ▶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트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림 1-11] 마황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 ▶ MDMA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음

[그림 1-12] MDMA



- ▶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되고 있음
- ▶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함

(3) LSD

- ▶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화학자 Albert Hofmann에 의하여 최초로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1-13] LSD 스티커



[그림 1-14] 정제형 LSD



(4) 날부핀(Nalbuphine)

- ▶ 날부핀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되었고, 일명 ‘누바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그림 1-15] 날부핀



- ▶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 시간은 3~6시간이며, 날부핀 3mg은 필로폰 6mg에 해당하는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이 있음

(5) 텍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 텍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로서 일명 ‘러미라’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 가격이 필로폰, 날부핀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음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 ▶ 카리소프로돌은 근육이완제로서 일명 ‘S’정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약물로서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음

(6) 펜플루라민(Fenfluramine)

- ▶ 중국, 태국 등지에서 중국교포 보따리 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 되고 있는 약물로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분미립편·섬수·상주청·철심감미교환·패씨감비환·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음

[그림 1-17] 펜플루라민



- ▶ 과다 복용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음

다) 기타 신종 유사마약

(1)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합성대마는 크게 JWH-018 및 그 유사체(JWH-030, JWH-175, JWH-176 등)와 HU-210, CP-47497 세 가지 종류로 신경계에서 작용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물질임

[가] JWH-018 등

- ▶ 일명 ‘스핑크’ 또는 ‘스페이스’ 등으로 불리며,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유사마약으로 천연 마약류인 대마와 전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임
- ▶ 건조된 식물에 합성물질을 흡착시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되는데 그 약리적 작용으로는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나타내며, 그 정도는 THC보다 더 강해서 유사한 대마류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냄

[나] HU-210

- ▶ 1988년 스위스에서 히브루대학의 라펠 메코람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합성 대마성분임
- ▶ 대마초의 천연 THC성분보다 100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내고 지속기간이 더 길며,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칭임

[다] CP-47497

- ▶ 1980년 화이자제약에서 개발한 진통효과가 있는 대마성분의 수용성 활성체임

(라) AM-2201

- ▶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Center Drug Discovery의 교수인 Alexandros Makriyannis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로, 영문이니셜에 따라 AM으로 명명되었다고 함

[그림 1-19] AM-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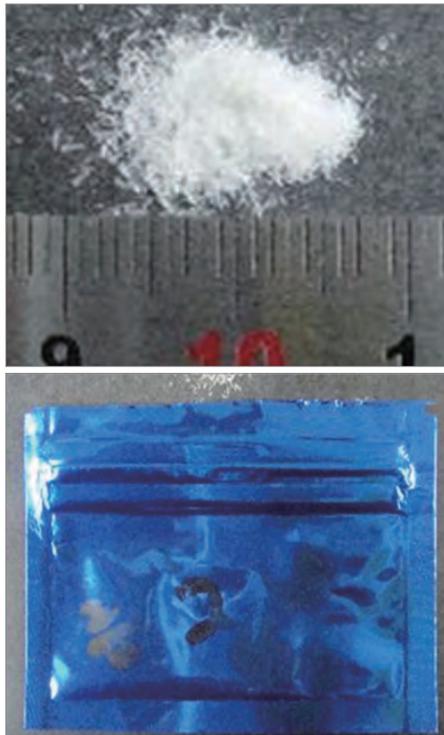


- ▶ JWH-018 유사체(불소만 추가됨)로 일반적으로 JWH-122, JWH-250 등과 혼합된 제품유형이 'SPACE CADET FLIGHT RISK'라는 품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됨
- ▶ 합성마약류를 건조된 식물의 잎에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소매로 포장, 판매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의 10배, 대마초성분의 40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 함유로 불쾌한 냄새가 나므로 젖은 빵·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시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함
- ▶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1. 2. 1 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지정됨

(2) 4-메칠에스케치논(4-MEC)

- ▶ 메스케치논³⁾ 유사체로 '4-MEC', '4-MEC crystal' 등의 품명으로 거래됨

[그림 1-20] 4-MEC



- ▶ 효과는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 2. 1. 마약류로 지정됨

3) 메스케치논

- ▶ 1928년에 처음 합성, 1930~40년대에 소련에서 항우울제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부터 오락용 약물로 사용
- ▶ 효과는 메트암페타민과 유사하고 종종 코카인과의 비교되며, 정신적 의존성이 상당히 강해 의학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음
- ▶ 코로 흡입하거나 연기로 태우고 주사로도 가능

[3] 크라툼(Kratom)

- ▶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 부르며, 다 자라면 높이가 약 15미터에 이릅니다.
- ▶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복용해 온 것으로, 원주민들이 힘든 일을 견뎌내기 위한 각성제로 주로 사용해 왔는데 그 잎을 씹거나, 차로 마시기도 하며 그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 ▶ 2006. 12. 4. 마약류로 지정되었고, 그 폐해는 각성과 진정의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소량을 복용하면 정신이 또렷해지며, 힘이 솟고, 말이 많아지며,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각성 효과를 나타내며,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과 도취, 최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4] 케타민(Ketamine)

- ▶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및 금단증상이 있으며, 특히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될 때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서 그 남용 가능성이 높음

[그림 1-21] 케타민



- ▶ 유흥업소 및 클럽에서 ‘date rape drug’으로 불리며,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 또는 흡입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남용방식에 따라 1~6시간 정도 환각효과가 지속되며, 맥박 및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함

(5) BK-MDEA

- ▶ MDEA⁴⁾ 유사체로 AM-694 등 변형체로 유통됨

[그림 1-22] BK-MDEA



- ▶ 마약류로 지정된 BK-MDBD와 체내에서 거의 동일한 대사과정을 거치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환각 효과를 일으킴

4) 환각 및 각성효과를 가지고 있는 페넬라민과 암페타민계열의 디자이너약물임

※ 디자이너 약물이란 불법 약물의 화학구조를 다소 변형시켜 제조한 합성 도취마약의 총칭으로 흔히 암페타민을 기초로 조제되는데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손상을 주며 사용자의 성격을 변화시킴

(6) 야바(YABA)

- ▶ 세계적 마약밀매조직인 '쿤샤'가 개발한 것으로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됨

[그림 1-23] 야바



- ▶ 필로폰(25%)에 카페인(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5%)을 혼합한 것으로 기존 필로폰과는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 데다 정제나 캡슐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쉬움
- ▶ 복용 후 수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30시간까지 지속되어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탈수증세도 나타나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보이고 수일간 계속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등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함

[7]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 ▶ 나팔꽃의 일종인 'Hawaiian baby woodrose'의 종자에 함유된 성분으로, LSD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킴
- ▶ 우리나라에서는 2000. 7. 1. 마약류로 지정되었고, 2011년 인천에서 처음 적발됨

[8] GHB(Gamma Hydroxy Butyrate)

- ▶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근육강화제로서, 뷰틸산계 유기화학물질로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강식품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date rape drug'로 불리기도 함

[그림 1-24] GHB



- ▶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이 발생하며 24시간 이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추적이 불가능함
- ▶ 우리나라에서는 2001.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지정됨

[9] 프로포폴(Propofol)

- ▶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社에서 처음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친 후 발매되었고, 국내에는 1992년부터 사용·허가됨

[그림 1-25] 프로포폴



- ▶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됨
- ▶ 프로포폴은 신경전달물질에 관련하여 작용하는 GABAA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을 빠르게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없애며, 부작용은 무호흡과 혈압저하 현상을 비롯하여 두통·어지러움·경련·구토·홍분·착란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마약대용품으로 오남용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2011. 2. 1.자로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라목)로 지정됨

3) 대마

가) 개요

- ▶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음

[그림 1-26] 대마



- ▶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음
- ▶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음
- ▶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음

- ▶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임
- ▶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과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나) 종류

(1) 대마초(大麻草)

-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그 학명이 Cannabis Sativa Linne이며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라고 불리고 있음

[그림 1-27] 대마초와 흡입기구



- ▶ 그 중 암나무의 경우에는 씨앗 생성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 재배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marijuana) 또는 브항(bhang)이라고 함. 한편 마리화나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함
- ▶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됨, 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느끼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도 오묘하게 변화하는 반면, 많은 양을 남용할 때에는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제3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함
- ▶ 대마의 남용이 위험한 것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대마보다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음

[2] 해시시(Hashish)

- ▶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이 해시시(hashish)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이며 약 10%의 THC를 함유하고 있어서 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가량 작용이 강함

[그림 1-28] 해시시



- ▶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함
- ▶ 보통 1kg의 해시시를 제조하기 위해 약 30kg의 대마초 처리를 요함
- ▶ 해시시 오일(Hashish Oil)은 대마로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되어 추출되기 때문에 THC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임

[그림 1-29] 해시시 오일



3. 마약류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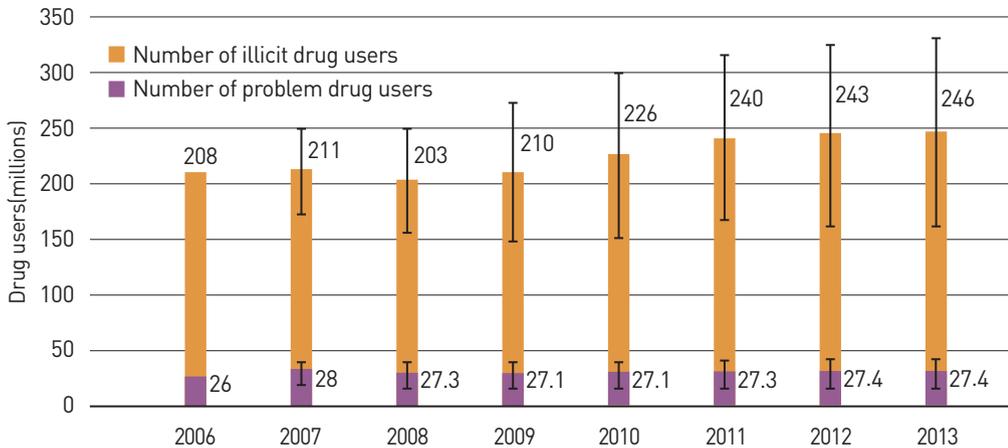
분류	종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사용방법	부작용	작용시간	
마약	천연 마약	아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헤로인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합성 마약	코카인	흥분	국소마취	주사, 코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 · 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산페치딘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	3~6
향정신성 의약품	메트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 · 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	4~8	
	LSD	환각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 · 진통	주사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롤	억제	진해거담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 ·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1. 국제 불법 마약의 최근 동향

-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13년 15~64세의 세계 불법 마약 남용 인구^{5]}를 작년보다 3백만 명이 증가한 2억4천6백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전세계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안정화 추세이며, 같은 기간 마약 관련 사망자수는 약 187,100명으로 주된 원인은 과다복용임
- ▶ 마약류 복용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약물 복용 장애 또는 약물 의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2,700만 명이 문제마약 남용자(Problem Drug User)^{6]}로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19만 명이 주사를 이용해 투약하고 있으며 그 중에 165만 명이 HIV 감염자임

[그림 1-30] 전세계 마약 남용자수(2006 ~ 2013)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5

5] 1회 이상의 불법 마약 남용 인구를 가리킴

6] 이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관련 국가별로 대체로 의존성이 있거나 주사를 통한 투약을 하는 마약남용자를 가리킴. 또한, 유럽마약중독모니터센터(EMCDDA)는 “주사를 통한 마약남용, 장기간 또는 정기적인 아편류, 코카인, 암페타민류 남용자”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함(Guidelines for Estimating the Incidence of Problem Drug Use, 2008)

- ▶ 교도소 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는 대마(Cannabis)로 수형자의 1/3이 수형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마약류를 접했으며 예방과 치료가 제한적인 교도소 특성상 HIV, C형 간염과 결핵 같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가 주사를 통한 투약으로 전염됨
- ▶ 남용자 3명 중 한 명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남용자들 가운데 5명 중 한 명만이 여성임, 남성은 여성보다 3배 이상 대마, 코카인과 암페타민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은 처방받은 아편 유사제와 신경안정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큼
- ▶ 대마수지의 생산은 북아프리카, 중동과 서남아시아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마초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음, 한편 남미지역이 사실상 전체 코카인 재배량을 차지하고 있고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와 동남아시아(주로 라오스·미얀마) 지역이 대부분 양귀비 재배량을 차지함

2. 최근 특이경향

가. 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신종 향정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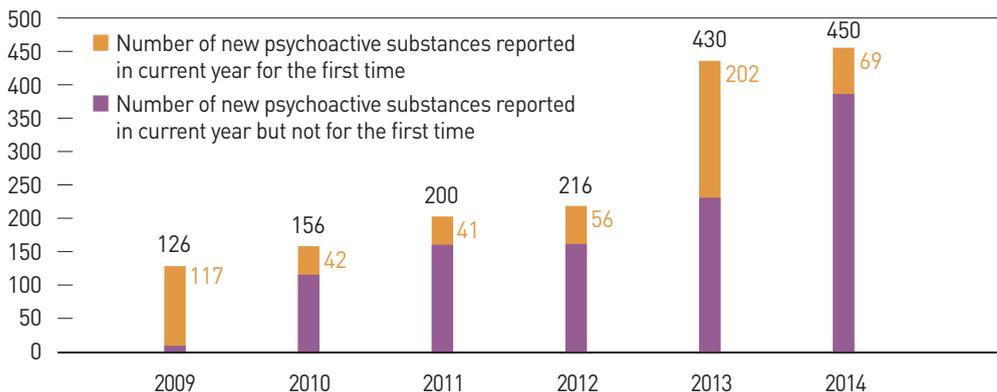
- ▶ NPS은 UNODC에서 ‘순수한 형태 또는 조제의 형식으로 남용되는 물질로 1961년의마약에관한단일협약 또는 1971년의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에 의해 통제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 NPS은 ‘designer drugs’, ‘legal highs’, ‘hebal highs’, ‘bath salts’, ‘research chemicals’, ‘laboratory reagents’로 불리는데, 신종(New)이라는 단어는 이미 40년전 NPS가 처음 합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발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마약통제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의미함
- ▶ NPS는 건강문제와 직결되는데 NPS 남용자들은 심각한 중독증세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를 남용 후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자살사건이 다수 있었으며 메페드론, MDPV와 4-MA 역시 사망사건과 관련 있는 물질임

나. 판매되는 NPS 카테고리

- ▶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noids) - THC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식물성 제품(herbal products)과 섞어 Spice, K2, Kronic 등의 이름으로 판매됨
- ▶ 합성 캐치논(Synthetic Cathinones) - 식물 Khat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캐치논의 유사체로 메페드론(Mephedrone)과 MDPV가 있음
- ▶ 케타민(Ketamine) - 사람 및 동물의 마취제로 저용량 복용시 각성 효과, 고용량 복용시 환각효과가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남용되는 NPS 가운데 하나임

- ▶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s) -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통 각성제로 생산되나 화합물의 수정을 통해 강력한 환각제가 될 수 있음
- ▶ 피페라진(Piperazines) - 각성효과로 인해 종종 ‘엑스터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며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BZP)과 mCPP가 가장 유명함
- ▶ 식물기반 물질(Plant-based substances) - 향정신성 특성 물질을 포함한 식물
 - 크라툼(Kratom) : 저용량 복용시 각성효과, 고용량 복용시 진정효과가 있는 동남아시아 원산지 식물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환각성분이 있는 멕시코 원산지 식물
 - 카트(Khat) : 케치논(cathinone)과 cathine(케친)이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인 식물로 씹어서 복용함
- ▶ 기타
 - 아미노인단(Aminoindanes) : 각성제
 - 펜시클리딘 타입 물질(Phencyclidine-type substances) 과 트립타민(Tryptamines) : 환각제

[그림 1-31] 2009년 부터 2014년 까지 보고된 신종 향정물질 개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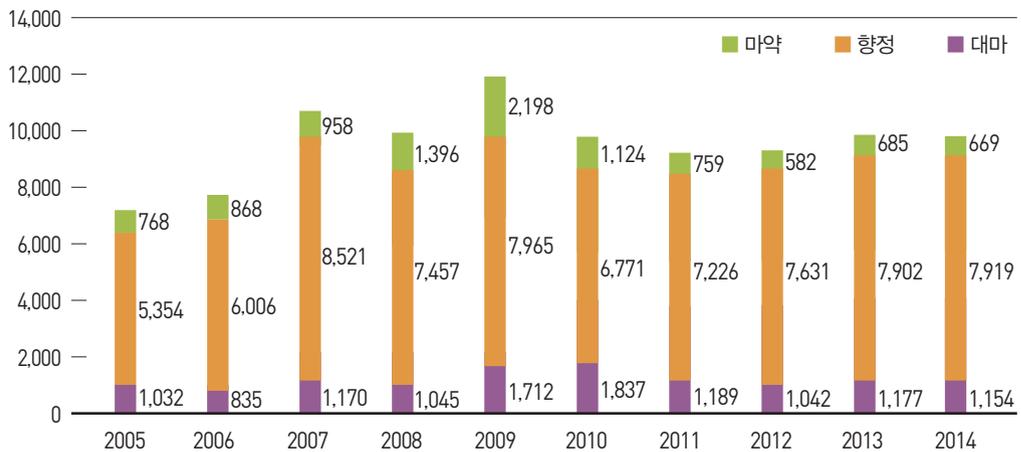
3. 국내 개황

가. 일반동향

- ▶ 마약류사범 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다가 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사범 퇴치전략의 성공(10개과 224명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함,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11,875명까지 증가하였고, 2011년도 9,174명, 2012년도 9,255명, 2013년도 9,764명, 2014년도 9,742명으로 10,000명 이하 선으로 억제되고 있음. 다만 대부분의 마약류 밀조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로 보임
- ▶ 그러나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이 메트암페타민의 주원료인 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에서 이를 추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는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한 신공법,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2건 2명, 원료물질 소디움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1건 1명이 적발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한 1건 2명(주한 미군)이 적발됨, 또한 2012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제조 방법을 습득, 감기약 등으로 메트암페타민, GHB 등을 제조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3년도에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일반인과 호주국적의 제조기술자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되어 마약류 제조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음
- ▶ 2014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9,742명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반면,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2,927명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함, 이는 단순 투약사범을 적발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코자 공급사범 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국내 주종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외국산 밀수입량은 42,055g으로 전년도 대비 44.2% 증가한 반면, 대마초의 외국산 밀수입량은 2,443g으로 전년도 대비 66.8% 감소함, 특히 필로폰 밀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단일사건으로 멕시코에서 15,000g이 적발된 것과 국제마약밀수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림 1-32]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나. 경유 목적 마약류사범의 증가 및 국내외 범죄조직 개입 마약류 밀수사건 증가

- ▶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인 및 외국인 등 다국적의 마약운반책을 고용하여 한국을 마약세탁의 중간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하거나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한 마약류 밀수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세계 각국의 공조로 헤로인 원료 물질인 아편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아편을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 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이 지역 국제마약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고, 필로폰 공급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경유 목적 마약류사범의 증가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 코카인과 헤로인 관련된 사례로는, 2008년도에 국내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계 코카인 밀수조직이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브라질로부터 대량의 코카인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일본으로 재수출하려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9년도에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기존의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에서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대만으로 그 루트를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고용하여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됨
- ▶ 필로폰 관련 사례로는, 2007년도에 일본 야쿠자 등이 개입하여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검거된 사건, 2008년도에 일본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 터키를 경유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 최종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 2009년도에 대만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중국산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사건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싱가포르를 경유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일본에 밀수출하려던 사건, 2010년도에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둔 동남아시아 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 1kg을 대만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밀수입하려던 사건이 적발되었고,
- ▶ 2010년에는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 조직원들이 한국과 외국 여성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 또는 일본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입하려다 국내에서 적발된 사건, 2011년도에는 중국 마약조직원이 한국인 여행사 직원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2.2kg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 ▶ 2012년도에는 영국인 운반책이 피지에서 한국을 경유해 영국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케냐 마약조직에 포섭된 독일인 운반책이 케냐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 폭력조직(부산 영도파)이 연계하여 대만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한 사건, 내국인이 일본 야쿠자조직원과 연계하여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부산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 ▶ 2013년도에는 영국인 운반책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피지로 필로폰 4kg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일본 야쿠자 연계 일본인이 마카오에서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순차 거쳐 일본으로 필로폰 6.24kg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나이지리아 마약조직과 연계된 독일인 운반책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피지로 필로폰 3kg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등이 있음
- ▶ 2014년도에는 일본인 운반책이 홍콩에서 김해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6kg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중국 마약밀수조직원들이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중국 선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3.7kg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 중국 마약조직원들과 연계된 국내 마약조직원들이 중국에서 필로폰 6.1kg을 구입한 후 거제시 고현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마약조직이 라벨링 기계 속에 필로폰 15.1kg을 은닉,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여 조직폭력배 등을 통하여 국내 유통을 시도한 사건, 아프리카 국제마약조직원들이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중국 상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 4.5kg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국내 마약조직원들이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4.05kg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 등이 있음
- ▶ 이는 일본,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마약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이 마약청정국가로 평가된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면 최종 소비지인 국가에서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대량 밀수 및 밀매범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해외 마약류 제조 등 공급책에 의한 국제우편거래 증가

- ▶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마약퇴치 노력의 결과 2003년 이래 국내 대규모 밀조·밀매 사범은 거의 사라졌음, 그러나 최근에 유학생, 외국인 등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마약류를 직접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 밀수사범들이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2014년도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사례는 268건(2013년 202건, 2012년 175건, 2011년 134건, 2010년 151건, 2009년 100건, 2008년 115건, 2007년 135건, 2006년 109건, 2005년 6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인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라. 신종 유사마약류⁷⁾의 밀수입 급증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증가

- ▶ 2014년도 신종 유사마약류의 밀수입량은 15,017g로 2013년도 10,172g, 2012년도 9,264g, 2011년도 3,840g, 2010년도 4,789g 대비 급증하였는데, 이는 유학생 및 학원강사 등 내·외국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러한 신종 유사마약류의 밀수입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마약류는 물론이고, 과거에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남용 사례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마약, 기존의 마약류 성분의 유도체(design drug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JWH-018 및 유사체, 크라툼,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서직산아미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신종, 변종, 합성 마약류를 총칭

- ▶ 2012년에는 프로포폴 압수량은 20,202앰플(50ml)로 전년도 2,004앰플(50ml)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 등지에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제약회사 직원과 이를 시술하거나 투약한 의사, 연예인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159앰플(50ml), 2014년도에는 319앰플(50ml)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으로 인해 최근 남용 사례가 감소하였음
- ▶ 신종 유사마약류가 기존 마약류와 구별되는 점은 환각이나 흥분효과의 배가, 성적 각성능력의 증진, 체중의 감소 등과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개발되었다는 점이고, 특히 사용상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시킨 물질들로서 주로 향정 계통에 속하는 마약류가 대부분임

마.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증가

- ▶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 86명, 2004년 203명,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 2010년 858명, 2011년 295명, 2012년 359명, 2013년 393명, 2014년도 551명으로 전년대비 40.2% 증가하였음
- ▶ 199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998년도 IMF체제로 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일시 출국하자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99년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36%나 증가하는 급증 추세를 보였고, 2005년도 전년대비 20.2% 감소한 162명, 2006년도 전년대비 28.4% 감소한 116명(총 19개국)인 반면, 2007년도 전년대비 157.8% 증가한 298명(총 28개국), 2008년도 전년대비 211.4% 증가한 928명(총 29개국), 2009년도 전년대비 4.1% 감소한 890명(총 28개국),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3.6% 감소한 858명(총 31개국),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65.6% 감소한 295명(총 27개국),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8.6% 증가한 359명(총 31개국),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총 393명(총 30개국),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40.2% 증가한 총 551명(총 33개국)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강사 및 근로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

- ▶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기 인천 등지의 근로공단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주로 태국·중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신종 유사마약류인 야바와 필로폰 밀매, 투약 등으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급증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외국인관련 범죄단속으로 2011년도에 마약사범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내체류 외국인 영어강사 및 노동자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향정사범은 주로 태국인과 중국인의 필로폰 등 밀수 및 투약사범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고, 대마사범의 경우도 태국인 및 스리랑카 공장근로자들의 급증과 미국, 캐나다 등 원어민 외국어강사와 러시아 선원 등 투약사범의 증가가 그 원인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신종 유사마약류의 밀수 및 사용 증가로 인해 향정사범이 대마사범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임
- ▶ 국적별로는 1997년도 이후 이란인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1위(31.8%)를 차지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3.7%, 29.1%, 16.0%로 이란인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다시 미국인이 1위(39.7%), 2007년도에는 중국인이 1위(21.1%), 2008년도~2010년도까지 태국인이 각 76.6%(711명), 64.9%(578명), 48.8%(419명)로 1위를 차지하였고 2011년도에는 중국인 35.3%(104명), 미국인 27.5%(81명) 順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미국인이 121명으로 1위(33.7%), 중국인 97명으로 2위(27%)를 차지, 2013년도에는 미국인이 127명으로 1위(32.3%), 중국인 107명으로 2위(27.2%)를 차지, 2014년도에는 중국인이 191명으로 1위(34.7%), 미국인 121명으로 2위(22.0%)를 차지함

